

수원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나8275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나82758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0. 18 선고 2017가단530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18. 3. 29.

판결 선고 2018. 5. 3.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0. 18. 선고 2017가단530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F 전 796m², G 전 196m², H 임야 1,006m²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6. 12. 9. 접수 제22699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의사는 있었음에도 이제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로서의 책임과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은 법률상 명확히 구분되므로, 원고에게 물상보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여 근저당권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정중

판사항인준

판사배다헌